

“변화를 선도하는 강남, 희망을 선사하는 강남”

등록번호	지역경제과-1709
등록일자	2016.1.13.
결재일자	2016.1.14.
공개구분	대시민공개

주무관	소비자보호팀장	지역경제과장	기획경제국장		
장유나	김선희	권승원	전결 01/14 김용운		
협조자					

2016~2019년 유기동물 보호관리 위탁운영 계획



2016. 01. .

강 남 구
(지 역 경 제 과)

- 2016년~2019년 -

「유기동물 보호관리」 위탁 운영 계획

유기동물 및 피학대동물을 보호 관리 할 수 있는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동물보호정신에 입각한 구조 및 보호관리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사회적 책무를 완수하고 유기동물로 인해 발생하는 생활민원을 효율적으로 처리하여 지역주민에게 보다 나은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유기동물 보호관리 용역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함.

I

관련 근거

1 동물보호법 제14조(동물의 구조·보호)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을 발견한 때에는 그 동물을 구조하여 치료·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동물은 학대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학대행위자로부터 격리하여야 한다.

1. 도로·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종이상자 등에 담겨져 내버려진 동물(“유실·유기동물“이라 한다)
2. 제8조제2항에 따른 학대를 받은 동물(“피학대 동물“이라 한다) 중 소유자를 알수 없는 동물
3. 소유자로부터 제8조제2항에 따른 학대를 받아 적정하게 치료·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동물

2 동물보호법 제15조(동물보호센터의 설치·지정 등)

- ①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4조에 따른 동물의 구조·보호조치 등을 위하여 동물보호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고,
- ② 시·도지사는 기준에 맞는 기관이나 단체를 동물보호센터로 지정하여 제14조에 따른 동물의 구조·보호조치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3 서울특별시 동물보호조례 제10조제1항(동물의 구조·보호)

구청장은 유기동물 또는 피학대동물을 발견하거나 유기동물 또는 피학대동물의 발견신고를 받을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구조·보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서울특별시 동물보호조례 제8조(동물보호센터의 설치·지정 등)

- ① 시장 또는 구청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구청장은 제10조에 따른 동물의 구조·보호조치 등을 위하여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5 강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6 동물보호센터 지정 절차 및 평가기준 (서울시 동물보호과-15982(2013.12.31))

7 2016년 유실유기 및 피학대동물 구조보호조치사업 계획(서울시 동물보호과-7592(2015.12.17))

8 2016년 동물 구조보호조치 및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사비보조금 지원계획 일람 (서울시 동물보호과-513(2016.1.12))

II 추진경위

- 주인을 잃거나 버려진 동물로 인해 주민생활 불편 및 안전 위협에 대응 할 수 있는 전문적이고 신속한 방견 단속 및 잃어버린 동물을 찾기 쉽도록 하는 대응 시스템 구축운영이 요구됨.
- 관내에서 발생하는 유기동물에 대한 포획 및 관리 시 포획인력, 수송차량, 구조 장비, 보호시설, 치료시설, 사체보관시설 등 구에서 직영하기에는 많은 예산과 전문 인력이 소요되며, 특히 동물보호시설을 관내에 설치 할 경우 혐오시설로 간주되어 민원 발생 우려가 있어 전문보호시설에 위탁관리 하고자 함.
- 일부 기존 미달 처리업체의 유기동물 학대 및 방치로 인한 동물보호단체 및 언론 단체의 고발감시가 확대되는 등 포획동물의 안정적인 관리주체가 필요한 실정임.
- 「동물보호법」 및 「서울특별시 동물보호조례」에 따라 지정제로 선정하도록

서울시로부터 “동물보호센터 지정절차 및 평가기준” 을 통보받아 절차에 맞춰 지정.

- 유실동물의 소유자반환 절차 개선 시행(동물보호과-1992호, 2015.02.04., 과업지시서 서식4참조)함. 유실동물의 소유자 확인, 관련법령 및 동물보호 교육, 미등록 동물의 등록안내 등 유실동물 반환절차를 개선하여 소유자 책임의식 제고로 재유기 예방하고자 함.
- 유기동물 분양(기증)절차 표준화 및 동물등록실시(동물보호과-1992호, 2015.02.04., 서식4참조), 유기동물 입양 전 입양 적격여부 사전 검토, 소유자 책임의무 명시한 분양(기증) 계약서 발급, 유기동물 분양(기증)시 내장형 방식으로 동물등록실시 등을 실시함.
- 유기동물 보호기간 연장(동물보호과-7592,2015.12.17), 유기동물 보호기간 연장과 실제 보호기간에 대한 적정비용 지급으로 입양율 증대 및 안락사율 감소 등 동물보호 수준 향상 도모

III 유기동물 처리 현황

(단위 : 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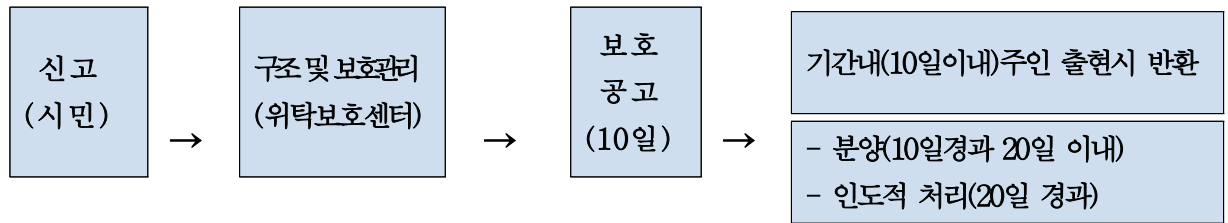
구 분	2015년	2014년	2013년	2012년	2011년	2010년
총 처리두수	210	219	317	505	602	703
개	157	173	197	248	222	346
고양이	50	38	104	240	357	328
기타동물	3	8	16	17	23	29

- 어려운 경제여건 및 재개발사업으로 인해 반려동물의 유기 사례가 많음.
- 동물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 및 구민들의 동물보호의식 향상으로 유기동물 신고와 동물보호론자 및 구민들의 유기동물 처리에 대한 관심도 증가함.

■ 보호기간 : 20일(보호공고기간 10일, 입양대기시간 10일 운영)

■ 보호비용(단가) : 16만원/마리(평균가격)
 ○ 기존 10일 보호 비용 10만원 + 추가 10일 보호 6만원

유기동물 처리과정



IV 위탁관리계획

위탁관리기간 : 2016. 03. 01. ~ 2019. 02. 28.(3년)

위탁관리방법 : 동물보호센터 지정 및 협약

지정업체수 : 1개소

동물보호센터

○ 신청대상

- ① 신청대상 동물보호센터는 동물보호법 제15조제3항,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및 서울특별시동물보호조례 제8조제3항의 기준을 충족하는 다음의 기관 및 단체로서
 - 1) 동물병원
 -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
 - 3) 축산 또는 수의학 관련 학교 등에서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
 - 4)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5조에 다른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
 -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동물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로서 동물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 ②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5조 별표4에 의거 보호시설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 ③ 제안공고일 현재 휴업중이거나 부정당업체 지정, 영업(업무)정지, 인허가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거나 폐업신고 수리를 받은 업체(사업자)는 응모할 수 없음.

○ 신청자는 신청서 제출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 1) 신청서(소정양식) 1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별지 제4호 서식]
- 2)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함)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후 인감날인)1부
- 2) 인감증명서(법인은 법인인감) 1부-인감동장(사용인감계첨부) 지참
 - 3)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대리인일 경우) 1부
 - 4) 유기동물 보호관리 계획서 1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5조 별표4의 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자료포함)
 - 5) 기타 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및 추가로 필요하는 서류 1부
(사본에는 “원본대조필”)
 - 동물병원 개설 신고필증, 동물보호단체등록증 등
 - 6) 동물의 구조·보호조치 실적(실적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 ※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의 위·변조나 제안내용에 허위사실 등이 발견된 경우 발주자는 사업신청자(계약 체결후에는 사업시행자)의 지위와 권리를 박탈할 수 있다.

지정절차

- 모집공고(10일)
- 동물보호센터 지정 신청 접수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신청서 접수
- 동물보호센터 지정대상 기관(단체) 심사 선정(신청업체가 2개 업체 이상일 경우)
 - 지정평가위원회 구성·운영 포함
- 기본요건을 갖춘 1개 업체만 신청한 경우 지정평가위원회의 평가를 생략하고 해당 기관(단체)을 동물보호센터로 지정
- 동물보호센터 지정 대상 기관(단체) 선정 공표(통보)
- 선정된 기관(단체)과 협약 및 동물보호센터 지정서 교부
 - 강남구와 동물보호센터 선정 기관(단체)과 협약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동물보호센터 지정서)

일 정

- 모집공고 : 2016. 1. 18 ~ 27. (10일간)
- 접수기간 : 2016. 1. 28. 09:00 ~ 1. 29. 18:00(2일간)
 - 접수처 : 서울시 강남구청 4층 지역경제과 소비자보호팀 ☎ 02-3423-5514)
 - 신청서와 함께 첨부서류 제출
(우편·택배·팩스 접수불가, 토·공휴일 접수불가)
- 평가위원회 구성 : 2016. 2. 1 ~ 2. 17(신청업체가 2개 업체 이상일 경우)
- 평가일시 : 2016. 2. 23(화) 14:00 ~

- 지정업체 알림 : 2016. 2. 24(수)
- 지정 대상 기관(단체) 협약서 체결 : 2016. 2. 24(수) ~ 2. 26(금)

■ 동물보호센터 지정 평가위원회 구성·운영(신청업체가 2개 업체 이상일 경우)

- 운영목적
 - 지정신청 동물보호센터를 대상으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지정하기 위하여 동물보호센터 지정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 구성 및 운영 : 지정을 위한 평가시만 구성·운영
 - 구 성
 - 위원장을 포함한 6명이상 9명이내로 구성하되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하여 구성
 - 위원장은 위원회 당일 위원 중에서 호선
 - 평가위원회 운영 : 동물보호센터 지정을 위한 평가시만 운영하고 평가 종료와 동시 해산
 - 위원회 정족수 : 위원 과반수이상 이 출석하여 평가하여야 함.
 - 평가위원회 임무
 - 동물보호센터 지정신청 업체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평가항 목별 주관적 평가 실시
- 평가위원 선발 제한
 - 지정 신청한 동물보호센터의 임직원 및 소속되었던 경험이 있는 사람
 - 기타 평가위원으로 선발하면 공정한 평가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구청장 이 판단하는 사람

■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 객관적(정량적) 평가(50점)
 - 시설장비 : 동물보호실(사육실), 동물구조차량, 포획장비
 - 인력현황 : 상근수의사 채용 및 경력, 구조인력수, 관리인력(동물보호, 사무관리)
- 주관적(정성적) 평가(50점)
 - 사업계획 : 사업계획의 적정성, 효율성, 동물보호 및 복지수준 등
 - 민간협력 : 입양활성화 계획 및 실효성

■ 동물구조보호비용 단가 산정 : 동물보호과-7592(2015.12.17.)에 의거함

- 두당 평균가격으로 2016년도 적용가격은 서울시의 「동물보호정책개발 및 동물보호센터 기본계획 수립연구」 용역보고서(2013.10월)의 “유기동물

보호관리사업 원가분석”의 ‘유기동물 구조·보호관리비’를 참고하여 서울시에서 책정한 16만원(20일 구조·보호조치 평균비용임)으로 함.

■ 평가방법 : 객관적(정량적) 평가 및 주관적(정성적) 평가

- 객관적(정량적) 평가 : 자치구 담당자가 평가기준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별로 평가함.
- 주관적(정성적) 평가 : 평가위원이 신청 기관(단체)별 평가표에 의하여 평가함
 - 평가는 지정신청서 제출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사업계획내용 서면평가 또는 발표하게 할 수 있음.
 - 주관적(정성적) 평가는 평가위원이 평가한 평가대상 기관(단체)별 평가점수 중 평가항목별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함. 다만, 최고점수·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는 하나의 점수만 제외하며,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 평가대상이 2개 업체인 경우 평가배점은 “우수, 보통”의 평가점수에서 업체별 상대 평가하여야 함.

■ 평가결과 적용기준

- 신청 기관(단체)별 객관적(정량적) 평가와 주관적(정성적) 평가의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산출평균한 점수를 합한 점수를 더한 점수 중 높은 점수를 받은 기관(단체)를 지정동물보호센터로 선정함.
- 동점 처리기준
 - 객관적(정량적)평가 중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점수가 높은 기관(단체)를 지정동물보호센터로 선정함.
 1. 시설 및 장비능력 점수 합계
 2. 인력평가 점수 합계
 3. 시설 및 장비능력 점수 중 동물보호실(사육실)상태 및 능력점수, 동물 구조차량 확보상태 점수 순
 4. 인력평가 점수중 구조인력, 관리인력, 상근수의사 점수 순

■ 평가위원 수당 : 외부 평가위원에 대하여 1회 10만원 지급

■ 위탁의 범위

- 강남구에서 발생하는 유기동물의 단속, 포획·인수, 보호관리, 반환조치, 기증·입양 등 사후 조치

- 관내 공원 및 대모산 등지에 야생화 되고 있는 방견의 단속
- 보호중인 유기동물의 보호(사육)와 치료
-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학대를 받은 동물 중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동물의 보호
- 소유자로부터 제8조제2항에 따른 학대를 받아 걱정하게 치료·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동물의 보호(사육)와 치료

■ 유기동물의 위탁 보호기간 : 보호소 입소일로부터 20일(보호공고기간, 10일, 입양대기기간 10일 운영)
 ※ 보호기간 이내 질병 감염 등 동물의 고통이 불피한 경우 수의사의 판단에 따라 인도적 처리 가능

■ 위탁관리비 지급 : 매월 발생하는 유기동물수를 지정된 단가로 합산하여 익월초에 지급

V 소 요 예 산

■ 예산 : 48,000천원(2016년도예산, 구비-24,000천원 시비-24,000천원)

■ 예산과목 : 지역경제과, 농업환경개선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가축방역 및 유기동물지원, 유기동물 및 TNR위탁관리,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VI 기 대 호 과

■ 길을 잃거나 버려지는 애완동물로 인해 발생하는 민원사항을 효율적으로 처리하여 생활민원서비스 수준 향상 도모

■ 특히, 애완동물 및 동물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보호시책 의무화 및 지자체의 동물보호시설 설치 의무화 등 강화된 개정 동물보호법으로 인해 주인 잃은 동물에 대한 기대 수요를 보다 적은 예산으로 효율적으로 대처

VII 행 정 사 항

- 지정 후 민원요청시 신속한 응대가 가능하도록 연락체계 구축
- 강남구청 홈페이지, 종합상황실 및 강남구청뉴스 등을 통해 홍보
 - 강남경찰서, 수서경찰서, 관내 119안전센터, 22개동주민센터로 공문시행

- 붙 임 : 1. 유기동물 보호관리 용역협약서(안) 1부.
2. 동물보호센터 지정신청서 1부.
3. 동물보호 지정서 1부.
4. 동물보호센터 사업 계획서(안)
5. 동물보호센터 지정 평가배점 기준표.
6. 강남구 동물보호센터 지정에 따른 세부평가기준 및 평가표.
7. 동물보호센터 지정평가위원회 평가표.
8. 평가대상 기관(단체)별 평가위원별 평가결과 집계표.
9. 동물보호센터 지정평가위원회 평가결과 집계표.
10. 동물보호센터 지정평가위원회 평가순위.
11. 동물보호센터 지정평가위원회 심의의결서.
12. 지정평가위원회 평가위원 서약서.

- 참고자료 1. 평가위원자격.
2. 동물보호센터 시설기준(동물보호법시행규칙 별표4).
3. 동물보호센터 준수사항(동물보호법시행규칙 별표5).
4. 평가기준 산정기초자료.
5. 단가 기초산출자료. 끝.